

# TBS 통신원 운영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교통정보를 비롯한 생활정보, 주민불편 사항 및 지역 현안, 사고·재난정보의 수집 및 방송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(이하 ‘TBS’) 통신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역할)** 통신원은 현장의 교통정보, 개선이 필요한 교통 환경·정책 및 주민불편 사항, 지역뉴스, 재해·재난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보, 제안, 방송하는 역할을 한다.

## 제3조(신분 및 위촉기간)

- ① 통신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를 사명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.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제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통신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4조(위촉)

- ① 통신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택시 협의회장, 개인택시 조합장 등 택시·버스 관련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통신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송·제보 실적이 있고 활동 의사가 있는 이들에 한해 통신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해촉)** 다음 각 호의 경우 통신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① 최근 1년 동안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
- ② 제보 및 방송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은 경우
- ③ TBS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- ④ 통신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## 제6조(통신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- ① 통신원회는 회장과 권역별 지역장을 선출하여 TBS 제작진과 상호

소통한다.

- ② 회장과 지역장은 통신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③ 통신원회는 회장과 지역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### **제7조(지역방송실)**

- ① 통신원의 정보 수집 및 제보, 방송 연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TBS는 서울 및 수도권에 10개소 이내의 지역방송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TBS는 제보·방송·회의 등 지역방송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역방송실은 제보·방송·회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## **부 칙**

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